

(3)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인사교류계획을 수립 실시함에 있어서 전보희망자가 적은 지역에서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으로서 근무성적 또는 업적평가결과(수석교사만 해당한다)가 양호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계속 근무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장기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나) 전직 등의 제한(「교육공무원법」 제21조)

교육공무원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교육공무원이 그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임용하거나 근무지를 변경하는 인사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기구의 개편이나 직제의 개정·폐지 또는 정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
- (2) 해당 교육공무원의 승진 또는 강임으로 인한 경우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다) 전직 등의 제한(「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

교육공무원법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전보권자 또는 전보 제청권자를 달리하는 기관 간에 전보하는 경우
- (2) 임용예정 직위에 관련된 특수한 연수를 받았거나 임용예정 직위에 상응한 근무 또는 연구 실적이 있는 자를 당해 직위에 보직하는 경우
- (3)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 (4) 형사사건에 관련된 혐의가 있는 경우
- (5) 교육공무원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거주하는 시·군·자치구 지역의 기관으로 전보하는 경우
- (6) 임신 중인 교육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교육공무원의 모성보호, 육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7) 당해 직위나 근무지에 계속하여 근무하는 것이 교육상 심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라) 전보계획(「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8조)

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에 대한 동일직위에 있어서의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기 위하여 매년 전보계획을 수립하여 전보를 하여야 한다.

마) 인사구역 등(동규정 제19조)

임용권자는 전보를 함에 있어 거리·교통 등 지리적 요건과 문화시설의 보급 등을 고려하여 설정한 인사구역 및 인사구역별 근무기간 등을 정한 전보기준을 전보발령 6개월 이전에 공개하여야 한다.

바) 정기전보(동규정 제20조)

- (1) 교원의 학교간 전보는 임용권자가 정하는 기간 동안 동일직위에 근속한 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학교장이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3제5항의 전보유예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